

음주운전 예방 서약서

본인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, 음주운전 시 아래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 하였습니다.

■ 징계별

구 분	위반사항	처분양정 (징계기준)	
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	◦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	파면~ 해임	
	◦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	강등~ 정직	
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공무원	◦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	◦ 혈중알콜농도 0.1%미만인 경우	감봉~ 견책
		◦ 혈중알콜농도 0.1%이상인 경우	정직~ 감봉
	◦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정직~ 감봉	
	◦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정직~ 감봉	
	◦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해임~ 정직	
	◦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파면~ 해임	
	◦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하지 않은 경우	파면~ 정직	
	◦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	해임~ 강등	
	◦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해임~ 정직	
◦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해임~ 정직		

■ 형사별

위반횟수	알콜농도(%)	처벌기준	
1~2회	0.05~0.1 미만	면허정지	6개월 이하 징역 / 150 ~300만원 이하 벌금
	0.1~0.2 미만	면허취소	6개월~1년 징역 / 300 ~500만원 벌금
	0.2 이상		1~3년 징역 / 500~1,000만원 벌금
3회 이상, 측정거부	삼진아웃		

2018. 7. 17.

서약자 : 소방사 김중희 *김중희*

구로소방서(부서명: 현장대응단 구조대)

음주운전 예방 서약서

본인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, 음주운전 시 아래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 하였습니다.

■ 징계별

구 분	위반사항	처분양정 (징계기준)	
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	◦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	파면~ 해임	
	◦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	강등~ 정직	
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공무원	◦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	◦ 혈중알콜농도 0.1%미만인 경우	감봉~ 견책
		◦ 혈중알콜농도 0.1%이상인 경우	정직~ 감봉
	◦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정직~ 감봉	
	◦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	
	◦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해임~ 정직	
	◦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파면~ 해임	
	◦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하지 않은 경우	파면~ 정직	
	◦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	해임~ 강등	
◦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해임~ 정직		
◦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		

■ 형사별

위반횟수	알콜농도(%)	처벌기준	
		면허정지	6개월 이하 징역 / 150 ~300만원 이하 벌금
1~2회	0.05~0.1 미만	면허취소	6개월~1년 징역 / 300 ~500만원 벌금
	0.1~0.2 미만		1~3년 징역 / 500~1,000만원 벌금
0.2 이상			
3회 이상, 측정거부	삼진아웃		

2018. 7 . 17 .

서약자 : 소방사 정다솜 (정명)소

구로소방서(부서명:현장 대응단)

음주운전 예방 서약서

본인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, 음주운전 시 아래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 하였습니다.

■ 징계별

구 분	위반사항	처분양정 (징계기준)	
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	◦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	파면~ 해임	
	◦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	강등~ 정직	
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공무원	◦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	◦ 혈중알콜농도 0.1%미만인 경우	감봉~ 견책
		◦ 혈중알콜농도 0.1%이상인 경우	정직~ 감봉
	◦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정직~ 감봉	
	◦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	
	◦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해임~ 정직	
	◦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파면~ 해임	
	◦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하지 않은 경우	파면~ 정직	
	◦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	해임~ 강등	
◦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해임~ 정직		
◦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		

■ 형사별

위반횟수	알콜농도(%)	처벌기준	
		면허정지	벌금
1~2회	0.05~0.1 미만	면허취소	6개월 이하 징역 / 150 ~300만원 이하 벌금
	0.1~0.2 미만		6개월~1년 징역 / 300 ~500만원 벌금
	0.2 이상		1~3년 징역 / 500~1,000만원 벌금
3회 이상, 측정거부	삼진아웃		

2018. 7. 17.

서약자 : 소방 오세준 (서명)

구로소방서(부서명 : 풍단 119 안전센터)

음주운전 예방 서약서

본인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, 음주운전 시 아래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 하였습니다.

■ 징계별

구 분	위반사항	처분양정 (징계기준)	
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	◦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	파면~ 해임	
	◦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	강등~ 정직	
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공무원	◦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	◦ 혈중알콜농도 0.1%미만인 경우	감봉~ 견책
		◦ 혈중알콜농도 0.1%이상인 경우	정직~ 감봉
	◦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정직~ 감봉	
	◦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	
	◦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해임~ 정직	
	◦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파면~ 해임	
	◦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하지 않은 경우	파면~ 정직	
	◦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	해임~ 강등	
◦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해임~ 정직		
◦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		

■ 형사별

위반횟수	알콜농도(%)	처벌기준	
		면허정지	벌금
1~2회	0.05~0.1 미만	면허정지	6개월 이하 징역 / 150 ~300만원 이하 벌금
	0.1~0.2 미만		6개월~1년 징역 / 300 ~500만원 벌금
	0.2 이상	면허취소	1~3년 징역 / 500~1,000만원 벌금
3회 이상, 측정거부	삼진아웃		

2018. 7. 17.

서약자 : 소방사 박상준 (서명)

구로소방서(부서명 : 독산 119안전센터)

음주운전 예방 서약서

본인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, 음주운전 시 아래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 하였습니다.

■ 징계별

구 분	위반사항	처분양정 (징계기준)	
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	◦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	파면~ 해임	
	◦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	강등~ 정직	
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공무원	◦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	◦ 혈중알콜농도 0.1%미만인 경우	감봉~ 견책
		◦ 혈중알콜농도 0.1%이상인 경우	정직~ 감봉
	◦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정직~ 감봉	
	◦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	
	◦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해임~ 정직	
	◦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파면~ 해임	
	◦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하지 않은 경우	파면~ 정직	
	◦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	해임~ 강등	
◦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해임~ 정직		
◦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		

■ 형사별

위반횟수	알콜농도(%)	처벌기준	
		면허정지	벌금
1~2회	0.05~0.1 미만	면허취소	6개월 이하 징역 / 150 ~300만원 이하 벌금
	0.1~0.2 미만		6개월~1년 징역 / 300 ~500만원 벌금
	0.2 이상		1~3년 징역 / 500~1,000만원 벌금
3회 이상, 측정거부	삼진아웃		

2018. 11. 17.

서약자 : 소방사 김동원 (김동원)

구로소방서(부서명: 시청 119 안전센터)